

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9. 10. 13 규칙 제 590호
개정 2010. 8. 2 규칙 제 610호
일부개정 2020. 5. 15 규칙 제1001호(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허가 신청 등) ①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2>

1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및 포곡읍의 주민 사용 15일전부터
2. 최초허가일 경우 사용 7일전부터
3. 변경허가일 경우 사용 3일전부터
4. 다만, 긴급을 요한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,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3. 개인과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,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함

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 제6조에 의해 사용권의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료 반환신청)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·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철거·원상복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탁자 선정방법)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설과 재산관리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.
2. 운영비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3. 주민편익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, 대여, 교환,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,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. 다만,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위탁운영 기간 중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

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.

제7조(위탁운영 신청)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동을 위탁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 경우 위수탁협약서로 갈음한다. <개정 2020. 5. 15>

제8조(운영시간 등)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:00부터 23:00까지로 하 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8. 2 규칙 제61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5. 15 규칙 제1001호,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「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편익시설 사용(변경)허가 신청서					
신청인	주 소				
	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		주민등록 번호		
	단 체 명		전 화		
내용	사 용 시 설 명				
	사 용 기 간	년 월 일 시	분부터	년 월 일 시	분까지
	사 용 목 적				
	사 용 인 원	명			
	이 용 료 구 분	[일 반]		[감 면]	
	변 경 신 청 내 용				
	변 경 신 청 기 간	년 월 일 시	분부터	년 월 일 시	분까지
	변 경 신 청 사 유				
	사 용 요 금				
	첨 부	행사계획서 1부			
<p>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(변경)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					
용 인 시 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 : 행사계획서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주민편익시설 위탁(수탁)운영 신청서			
시 설 명			
신청자	법 인 (단 체) 명		
	주 소	법인(단체 또는 개인) 등 록 번 호	
	대 표 자 성 명	전 화 번 호	
법 인 (단 체) 설 립 근 거		설 립 일 자	
재 산 계 : 백만원(동산 백만원, 부동산 백만원)			
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	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<p>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%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신청자 주 소 : 법인(단체)명 : 대 표 자 : (인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용 인 시 장 귀하</p>			
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인(단체)현황 : 설립인가(등록)증 사본, 법인(단체 또는 개인) 등기부등본, 법인(단체 또는 개인)기본재산현황, 수익사업현황 2. 사업계획서 3. 대표자 사용인감계 4. 운영비 부담계획 5.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인(단체 또는 개인)의 체육시설 관련 사업실적 			